

’98. 8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김 제 시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안
번호 : 98-60 :

제출년월일 : 98. 8.
제출자 : 김제시장

1. 제정이유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 및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여 깨끗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정함(안 제5조).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사항 정함(안 제8조).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 정함(안 제10조).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감량의무사업장 의무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사항 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6조, 제63조, 등별시행령 제6조 및 등별시행규칙 제6조.
-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97. 12. 환경부).

김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능·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갈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록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갈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갈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들기 있는 음식물쓰레기라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여과 과정 없이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음으로 인하여 봉투에 물이 고여 있거나 봉투에서 물이 흐르는 상태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

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②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제작·공급·판매)

①음식물쓰레기를 닫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별도로 구분하여 별표 2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종류·재질·제작·공급·판매등은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은 크기·용량 등을 현실에 맞게 별도 제작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구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납으로 납부 개시일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를 수집·운반업 협회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협회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10일전까지 시장에게 의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민간기업과 공동투자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의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의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갈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게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14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투기 단속
2.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적정 배출 지도
3. 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지도

제15조(준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김제시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갈량의 두이행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제2항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닐·병투껑·이쑤시개·나무젓가락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행구어 배출-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블표 2]

쓰레기 봉투의 표시(제8조제1항관련)

이 선위는 봉투를 륙기위한 부분입니다.

김제시문장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 일반용 -

1.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륙은 후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비닐·병투껑·이쑤시개·나무젓가락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륙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둘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합시다.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행구어 배출합시다.
 - 패자류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륙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합시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용기나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놔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제시장

연락처 : 김제시청 〇〇〇〇〇 (540 - 〇〇〇〇)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다함께 참여 합시다.

(주) 뒷면은 지역 주민에게 요망하고자 하는 내용을 삽입

[별표 3]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제10조제1항관련)

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의 산정

□ 최종 관폐가격은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과 일치하되, 필요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부과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산정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을 기준으로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부과

○ 전용봉투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① 시의 공동주택 운영·관리주체에 대한 부과액 산정방법

- 부과기준시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평균가격 × 월간 배출량(ℓ)
- 중량기준시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평균가격 × 월간 배출량(kg)
× 환산계수(ℓ/kg) ·

※ ⑤ 환산계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부계를 부과로 환산한 값 (ℓ/kg)

⑥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에 수수료 산출액의 10원 미만은 버틸

② 공동주택 운영·관리주체의 각 세대에 대한 부과액 산정방법

가)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 \text{자치구부과액} \div \text{공동주택 총 인구수} \times \text{세대별인구수}$$

나)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 \text{자치구부과액} \div \text{공동주택 총 분양면적} \times \text{세대별분양면적}$$

※ 다만, 공동주택운영·관리주체는 주민협의에서 결정된 방법으로 부과 할 수 있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상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다.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동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제2항 관련)	30	50	100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상호(경칭)	사업장등록번호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 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처리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kg/일		kg/월		kg/월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용계획	kg/월					
위탁재활용계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제시장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위탁처리			보관량
		자가처리방법	자가처리량	처리량누계	위탁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작성요령】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 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상호(경칭)	사업장등록번호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 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처리시설	연간 처리량	부산물 처리				
	감량처리 능력 (kg/일)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량	재활용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간접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김제시장귀하

第9條 및 第10條 刪除 (95·3·4)

第11條 (廢棄物公定試験方法) 環境部長官은 發棄物의 危害性의 判斷 및 發棄物의 처리방법의 決定에 필요한 基礎資料가 되는 發棄物의 性狀 및 汚染物質의 排出量을 分析할에 있어서 그 分析의 정확과 純一을 기하기 위하여 發棄物公定試験方法를 정하여 이를 設定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35454)

第2章 発棄物의 排出 및 처리

第12條 (廢棄物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發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3·4)

第13條 (生活廢棄物의 처리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排出되는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改正 95·3·4)

②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發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發棄物處理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3·4)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할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5·3·4)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發棄物排出量에 따라 手數料를 차등 徵收하므로 친고할 수 있다. (新設 95·8·4)

第14條 刪除 (95·3·4)

第15條 (生活廢棄物排出者の 處理協助等) ①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發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 (改正 95·3·4)

②生活廢棄物排出자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종류·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5·3·4)

第16條 (生活廢棄物保管施設등의 設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廢棄物排出者로 하여금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生活廢棄物保管施設 또는 容器를 設置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97·12·13 法5454>

②市長·都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排出者가 設置하는 保管施設 또는 容器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生活廢棄物排出者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5·8·4·97·12·13 法5454>

第17條 대지 第23條 刪除 <95·8·4>

第24條 (事業場廢棄物排出者の義務등) ①事業場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改正 95·8·4>

1. 事業場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生產工程에 있어서는 技術開發 및 再利用등의 방법으로 事業場廢棄物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抑制하여야 한다.

②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排出者は 事業場廢棄物의 종류·發生量등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都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市長·都守·區廳長은 申告받은 사항中 指定廢棄物에 관한 사항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를 거쳐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③事業場廢棄物排出者は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을 비치하고, 事業場廢棄物의 發生量·再利用 및 再生利用狀況·處理實績등을 記錄하되, 그 보존기간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3年으로 한다. <改正 95·8·4>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 및 규모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は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廢棄物의 發生抑制를 위하여 環境部長官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項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新設 95·8·4>

⑤環境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指針을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事業場廢棄物排出者에 대하여는 事業場廢棄物의 發生抑制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新設 95·8·4>

第25條 (事業場廢棄物의 처리) ①事業場廢棄物排出者は 그의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廢棄物을 再生處理하는 者,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改正 95·8·4>

② 및 ③削除 <95·8·4>

④事業場廢棄物中 指定廢棄物을 運搬·처리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그 運搬 조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⑤2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각각의 事業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收集·運搬·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을 공동으로 設置·운영 할 수 있다. <新設 95·8·4>

⑥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하는 者가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할에 있어 第12條의 规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收集·보관·運搬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당해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하는 者에게 收集·보관·運搬 또는 처리방법의 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2·12·8, 95·8·4, 97·12·13 法5454>

第3章 廉棄物處理業 등

第26條 (廢棄物處理業) ①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資本金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指定廢棄物을 대상으로 하여 廉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廢棄物處理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廉棄物收集·運搬業

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業

2. 廉棄物中間處理業

廢棄物中間處理施設을 갖추고 廉棄物을 燃却·中和·破碎·固化化등의 方法에 의하여 中間處理하는 業

3. 廉棄物最終處理業

廢棄物最终處理施設을 갖추고 廉棄物을 埋立·海域排出등의 方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業

4. 廉棄物再生處理業

廢棄物中間處理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運生處理하는 営業

5. 廢棄物綜合處理業

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廐棄物을 運生處理, 中間處理,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営業

③ 第2項第2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廐棄物處理業 허가를 받은 者는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廐棄物收集·運搬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二 處理對象廢棄物을 스스로收集·運搬할 수 있다.

④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할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二 廉業區域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블일 수 있다. 다만, 二 廉業區域의 제한은 廐棄物收集·運搬業의 경우에 한한다.

(全文改正 95.8.4)

第27條 (嚴格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廐棄物處理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產者 또는 限制治產者
2. 破產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위반하여 戰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중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戰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廐棄物處理業의 허가가 取消된 者로서 그 허가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仁員증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法人

(全文改正 95.8.4)

第28條 (許可의 取消 등)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廐棄物處理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廉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取消하여야 한다.

1. 第27條第1號 내지 第4號 또는 第6號에 해당된 경우. 다만,法人의 仁員증 第27條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2年이내에 그 仁員을 改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1條 (罰則) ①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3, 95·8·4>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殘棄物을 收集·運搬 또는 보관한 者
2. 内지 4. 刪除 <95·8·4>
5.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制限 또는 조건을 위반한 者
6.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變更한 者
- 6의2.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殘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7. 第3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施設을 유지·管
理한 者
8. 第24條第2項·第25條第4項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9. 및 10. 刪除 <95·8·4>
11. 刪除 <92·12·3>
12.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을 指命하지 아니하거나 技術管理代行契約
을 체결하지 아니한 者
13.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4. 및 15. 刪除 <95·8·4>

第6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二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9條 내지 第6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
金刑을 科한다.

第63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
다. <新設 95·8·4>

1. 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搬置命令을 위반한 者
 2. 第30條第3項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
고 申告事項을 변경한 者
 3. 第44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증지 또는 使用制限命令을 위반한 者
-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8·4>

第39編 環境 第3章 犯棄物管理 犯棄物管理法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犯棄物을 버린 者
 2.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1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命令 또는 搬置命令를 위반한 者
 4.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者
 5.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施設의 사용을開始한 者
 6.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를 한 者
 7. 第4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教育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 教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8.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者
 9.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10.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検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11.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별로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試課·徵收한다. <改正
95·3·4·97·12·13 法5454>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上知를 받은 날
부터 30日 이내에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异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3·4·97·12·13 法5454>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异議
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
次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5·3·4·97·12·13 法5454>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异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5·3·4>

附 則

제39조 環境 第3章 発棄物管理 폐기물관리별시행령

활용 등을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부경 92·12·9, 94·12·23 대령1442·대령1447·
대령1450, 96·1·19, 96·2·23)

1. 해안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보존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3. 도로변·철도변 또는 관광지로서 환경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4. 농업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의 취수원으로부터 1단5천미터(광역 상수원인 경우는 3단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6. 원자력법에 의한 제한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과학기술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6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것. 다만, 시·군·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특전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침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6·1·19)

제7조 (폐기물의 갈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96·1·19)

제7조의2 삭제 <96·1·19>

제399회 제 3회 第3章 폐棄物管理 계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5 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톨
불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
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37·7·19)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인구·주거형태·산업구조 및 분포·지리적 환경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갈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제 6 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등) ①영
제 6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할은 별표 4
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
에 의한 기준 및 방법의에 따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지도
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③영 제 6조제 3 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활량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고형률활량이 15퍼센트미
단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 2조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탁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
리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생처리하는 경우 또는 재생처리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제품의 원료·재료 또는 연료등으로 재생처리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과쇄·분쇄·절단·충축·사포화·퇴비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 1 호 각목 외지 바늘 및 자동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
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제 7 조 (생활폐기물관리제의지역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 1

전 라 북 도

은 560-761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1번지 / 전화80-3512 전송 82-3116 / 담당 최재현

문서번호 환보 67510 - 1456

시행일자 1997. 12. 11. (3 년)

(경 유)

수 신 : 시장. 군수

참 조 : 환경보호(청소)과장

선 결			지 시
	점	일자 시간	
수	번호	1998. 1. 5	결
처	리 과	환경보호과	제
달	당 자		공
			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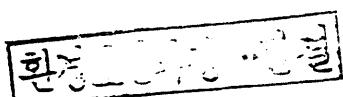
제 목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시달

1. 환경부 폐관 67500-1668(97. 12. 22)호와 관련입니다.

2.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수수료부과·징수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조례준칙을 제정·시달하니 시·군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1부. 끝.

전 라 북 도 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제정

1997. 12.

환 경 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안) 제정

I. 목적

-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제·개정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II. 필요성

- '97. 7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자치단체별 조례 제·개정등 후속조치 미흡
-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를질 혼입 및 봉투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하여 재활용촉진 필요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종 생활폐기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을 조례로 규정하여 감량의무 디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 유지
-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할으로써 재활용 확대

-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 도입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증 1일 300kg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배출량에 따라 징수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시설을 설치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도록 함

IV. 세부 지침개정 방향

1.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자치단체의 장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생활폐기를 배출자에 대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1일 300kg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위탁재활용하거나, 자가 감량처리트록 배출방법을 조례로 규정(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 적용)
-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자중 퇴비화·사료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퇴비·사료 생산업체가를 받은 자, 퇴비·사료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스스로 퇴비·사료등으로 재활용
-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고,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신고,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플리에틸렌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색상은 흰색 또는 노랑색으로 통일하며, 전용봉투의 용량은 5ℓ, 10ℓ, 20ℓ, 30ℓ, 50ℓ를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5ℓ 미만도 제작가능토록 함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하고 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여야 하며, 용량은 120ℓ, 240ℓ를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장이 수거체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함

~~제정기기종기우선설치지역~~

-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로 수거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홍보, 수수료 부과 및 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공동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도록 할

2.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을 위하여 전용봉투사용시 공동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전용봉투 미사용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기계식상차가 가능도록 규격등을 정하도록 할
-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도록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도록 하고, 자체 갈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갈량부산률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할

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전용봉투 사용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하도록 할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과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산정은 일반용 봉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재활용비율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할
-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을 총 세대수로 배분하여 세대당 일정금액을 산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하도록 할

3.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확대

- 자치단체의 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처리를 대행 가능토록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 연계·알선을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릴립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및 재활용할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재활용자(퇴비화·사료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퇴비·사료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퇴비·사료 재생이용 등·축산가등)에게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
 - 자치단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의도 수거·운반 및 재활용이 가능토록 확대

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등 시설에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재활용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할 수 있도록 함

4. 기타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증 1일배출량 300kg이하 배출하는 생활폐기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미이행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유지
- 일정규모(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신축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를하도록 하고, 적정 보관시설 및 수거용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치 및 개선 조치명령을 경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를증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능·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록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같은 풍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로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을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둘기를 제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을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을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을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을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을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을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처리시설(음식을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능·축산가등 음식을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틀 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를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벌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등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

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통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통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본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를 수집·운반업 협약을 맺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협약을 맺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여부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1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예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질을 제거하고, 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투경·塑胶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상
폐기를 관리법	1. 생활폐기를 배출자가 음식을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통로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를 배출자에게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3. 음식물쓰레기 브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제2항 관련)	10	20	30
		30	50	100

< 별지 1호서식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신고인	상호(영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능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 예상량		kg/월				
자가갈량 처리계획	감량 처리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kg/일		kg/월	kg/월		
자가재활 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 용계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폐기물관리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단위 : kg)

◀ 쇠고기 예절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달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여,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여,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여,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영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 | |
|-----------|--|
| 사업장
규모 |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50명 |
| |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50m ² |
| |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50m ² |
| |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50m ² |
| |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50실 |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kg/년

처리 실적

자가처리	자가처리 량(kg/일)	처리시설 별 (kg/일)	연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 량	재활용 방법	위탁 량	재활용 방법	의탁 재활용의 경우		
				업체명	업체종	주소· 전화

위와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또는 별인)

시장·군수·구청장 규하